

● 제30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9.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574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혜련 의원외 25명
- 나. 제안일 : 2021. 8. 10.
- 다. 회부일 : 2021. 8.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는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종’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종류로 ‘국적’은 일정한 사람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나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적’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조항에 ‘국적’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UN 아동권리협약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있어 제1원칙인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아동 차별금지 사유 확대

- 개정안(안 제4조제1호)은 아동친화도시조성 원칙 중 하나로 명시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에 현행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 외에 “국적”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1)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4대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이 협약은 1989년 11월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가입하고 1991년 11월에 비준하였음. 2021년 현재 196개국이 비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임.

<p>시장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아동이 <u>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u>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2. ~ 5. (생략)</p>	<p>----- ----- -----.</p> <p>1. 아동이 <u>국적,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u>----- -----.</p> <p>2. ~ 5. (현행과 같음)</p>
---	---

- 현행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은 총 5개의 호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인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존과 발달 권리(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그 기본이념²⁾으로 아동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³⁾하고 있음.

- 또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간 조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⁴⁾에서도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약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에

2)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4)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90일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⁵⁾ 현황을 살펴보면, 19세이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가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28.7%가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동 기간 19세이하 등록외국인은 56.1%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등록외국인 통계가 5세별로 생산되어 만 18세미만 아동수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등록외국인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외국인 아동의 인권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음.

<서울시 등록외국인 추이>

구분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19세이하		19세이하
2020	9,668,465	1,405,611	242,623	23,540
2019	9,729,107	1,482,264	281,876	29,219
2018	9,765,623	1,545,489	283,984	28,381
2017	9,857,426	1,623,118	267,153	27,604
2016	9,930,616	1,695,519	273,441	26,662
2015	10,022,181	1,769,089	274,957	22,726
2014	10,103,233	1,838,505	266,360	19,544

5)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함.

구분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19세이하		19세이하
2013	10,143,645	1,904,547	244,410	16,443
2012	10,195,318	1,972,496	247,108	15,082
증감률	-5.2%	-28.7%	-1.8%	56.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각년도..

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령별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하나인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을 포함시켜 외국인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현재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 등의 경우, 개별법에서 지원 대상을 내국인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그나마도 더 취약한 양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